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95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추미애·김성화·송옥주

이수진 • 한정애 • 강선우

정을호 • 박균택 • 정성호

고민정 • 박홍배 • 서미화

박해철 · 이성윤 · 이병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점이 확인되었으며,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이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더라도 그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통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등).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결과
 -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
 -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 5. 제10조의 비상계엄하 군사법원의 재판 사항
 - 6. 그 밖에 계엄 선포 이후 각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사무 내용 및 지휘·감독 이행 사항

제13조의 제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③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 도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
	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u><신 설></u>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
	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
	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
	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
	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결과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u>지휘・감독 사항</u>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
	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5. 제10조의 비상계엄하 군사법
	원의 재판 사항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 6. 그 밖에 계엄 선포 이후 각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사무 내용 및 지휘·감독 이행 사 항
-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 반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 니한다.
 - ③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